저작물 사용료 분배 규정

2001.09.12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가 저작물을 관리하여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의 분배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분배란 저작물 사용자로부터 협회가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별도로 정한 관리수수료를 공제하고 수익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분배자료) ① 분배자료란 사용자로부터 제출된 사용저작물 목록 등 사용료 징수의 대상이 된 저작물에 대한 자료를 말한다
② 사용료의 분배는 분배자료에 의하여 분배한다.

제4조(분배대상 저작물) 분배 대상저작물은 분배대상 사용료의 징수 대상이 된 저작물로 한다.

제5조(사용료 분배방법) ① 분배대상이 된 저작물의 사용료가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수령 즉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② 사용료가 10만원 미만일 때는 수익자가 수령할 것을 희망하지 않는 한 수탁자가 보관하고 합계 금액이 10만원 이상이 된 때에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말에는 모든 수익자의 사용료를 정산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④ 협회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또는 분배업무수행에 곤란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분배시기 등 분배방법을 총회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이의신청) 수익자가 저작물 사용료 분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직접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15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